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4회 임시회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2025. 9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16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 등 5명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검토기간: 2025. 9. 3.(수) ~ 9. 12.(금)

## 2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아동보호구역의 지정, 공고, 해제 절차 규정(안 제5조)
- 라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사업추진 등의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시설물 설치 및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~제9조)
- 바. 사업 협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(안 제10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
  
- 주요 내용은
  - 안 제2조에서 아동보호구역,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,
  - 안 제5조에서는 해당지역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조사 등을 거쳐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, 해당시설의 이전·폐쇄로 지정사유 소멸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 -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
  - 안 제7조에서 비상벨·안내판을 설치, 아동안전보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8조 관련 시설물 설치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·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 
- 『2023 범죄분석』(2023년 대검찰청)에 따르면, 약취유인범죄 중 58.5%(349건 중 204건)가 13세 미만 아동대상 유괴범죄였으며, 아동유괴범죄의 49.5%(101건)가 노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,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아동이 활동하는 시설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·운영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아동복지법

[시행 2025. 7. 19.] [법률 제19555호, 2023. 7. 18., 타법개정]

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개정 2012. 10. 22., 2020. 4. 7.>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,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
4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 10. 22., 2023. 3. 14.>

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<개정 2012. 10. 22., 2023. 3. 14.>

[제목개정 2012. 10. 22., 2023. 3. 14.]

## □ 아동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25. 7. 19.] [대통령령 제35499호, 2025. 5. 7., 일부개정]

제29조(아동보호구역의 지정)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)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30.>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30.>

1.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인 경우: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

2.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인 경우: 아동보호구역 직접 지정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. <개정 2021. 3. 30.>

1.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

2.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

3.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. <개정 2021. 3. 30.>

1.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: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

2.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: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,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30.>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,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1. 3. 30.>

제30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2., 2021. 3. 30., 2023. 9. 12.>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·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·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2., 2021. 3. 30., 2023. 9. 12.>

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2., 2023. 9. 12.>

[제목개정 2013. 1. 22., 2023. 9. 12.]

제31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. 22., 2023. 9. 12.>

[제목개정 2013. 1. 22., 2023. 9. 12.]